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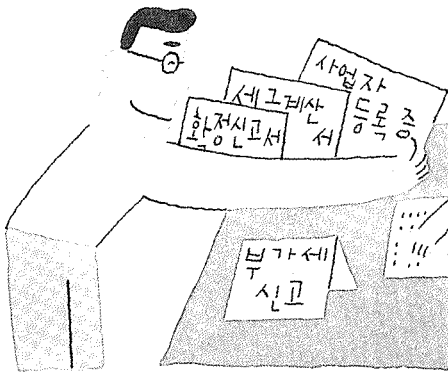
#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③

지난호에 이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을 계속 심는다.  
이 내용은 하이텔로 제공되는 국세청세무정보를 토대로 본 편집부에서 정리, 게재하는 것이다.

##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연간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내야할 세액  
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기초공제 (48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 배우자공제 (54만원), 장애자공제 (1인당 48만원),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노인 1인당 48만원), 부녀자세대주공제 (54만원), 기부금특별공제 등으로 5인 가족기준 24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일기장 의무자나 간이장부 의무자가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소득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부과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신고대로 인정된다.

성실하게 기장을 한 사람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로 인정하거나 실지조사없이 간단한 서면검토만으로 소득세를 결정한다.

## 소득세 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 1, 4, 7, 10월 1~25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 1월 1~25일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5월 1~31일
-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창구가 붐비므로 20일 이전에 신고하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택시, 용달, 우유, 요구르트배달원 및 직전 기중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매 신고기간마다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보낸다.
- 따라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모든 신고가 끝나게 되어 아주 편리하다.

## 자율접수창구 통해 간섭없이 신고

다음 유형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괄 접수창구에 신고서만 내면 아무런 간섭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그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성실신고 회원조합, 공

평과세협의회 등 납세자 단체, 조합을 통하여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담당자에게 접수할 필요없이 자율접수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고서 대신 작성도 가능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서 대리작성 창구를 이용하면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한편, '영세자 신고담당 창구'도 설치 운영하는데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의 세무신고상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 신고내용대로 종결되는 경우

장부를 갖추고 이에따라 세무신고를 한 경우는 매일매일의 거래내용을 증빙서류에 따라 매입매출장 등 장부에 성실하게 기장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정한 표준신고율 (표준과표 신장률)이나 소득표준률대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세무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내용이 컴퓨터에 의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의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각종 증빙은 성실히 보관해야 한다.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표와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 영업내용을 기록한 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